Ⅰ.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민의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Ⅱ.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장(埋葬)중심의 장묘문화가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들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의식 전환, 장묘제도의 개선, 장묘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제도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特別市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의회 전문위원(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다.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5급 공무원이상된자로서 공무원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마.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된 자로서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자

사.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단서 개정 규정의 직을 제외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999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業務計劃報告

Ⅰ. 一般現況

議 會

□開院 — 1998. 7. 9 (第5代 議會)

□議員
- 定員 : 104名(地域 94, 比例 10)
- 現員 : 104名(地域 94, 比例 10)

○黨籍別 : 새정치국민회의 83, 한나라당 20, 자유민주연합 1

○性別 : 남 93명, 여 11명

□機構

(다음 페이지에 계속)